

외국어졸업인증제 실시에 관한 규정

- 제정 : 2009. 3. 1
- 개정 : 2010. 3. 1
- 개정 : 2012. 10. 1
- 개정 : 2014. 11. 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 46조에 의한 외국어 졸업인증제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

- ① 2009학년도 신입생(2012학년도 3학년 편입생)부터 적용한다. 단, 외국어능력향상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.
- ② 외국인 신,편입생, 군위탁 신입생, 장애학생, 체육특기자, 새터민전형 입학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3조(졸업인정기준)

- ① 전공별 외국어졸업인증을 위한 기준 점수는 각 단과대학에서 정한다(별첨1,2)
- ② 정기토익 외에 국제어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 토익도 인정한다.
- ③ 학과편제 변경시 이전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한다.
- ④ 2015년부터 2009년~2014년 입학자가 정기토익 및 모의토익 이외 성적을 제출할 경우 2015년 인증기준에 따라 인정한다.

제4조(시행절차)

- ① 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한 학생은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초까지 외국어 졸업 인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단과대학을 경유하여 학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외국어졸업인증 신청 기간은 매 학기 초에 공고하며, 성적표의 유효기간은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 인 것으로 한다.
- ③ 1학년 학생 중 단과대학별 졸업인증기준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1학년 2학기초 성적표를 제출하고,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외국어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.
- ④ 외국어졸업인증을 취득한 학생은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에 등재하여 표시한다.

제5조(휴학 및 복학자) 휴학 및 복학자에 대한 졸업인증 기준 적용은 입학학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.

제6조(복수전공자) 복수전공자의 졸업인증기준은 주전공의 졸업인증기준으로 적용한다.

제7조(졸업인증 미취득자의 처리)

- ①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 초까지 외국어졸업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학생은 취득 시까지 학년 수료로 처리한다.
- ② 외국어 졸업인증기준 미달자는 외국어능력향상위원회에서 정하는 교내 어학원 개설 별도의 과정을 이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인증자격을 취득 할 수 있으며, 본 규정의 3조1항을 준용한다.

제8조(외국어능력향상위원회)

- ①외국어졸업인증제도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어능력향상위원회(이하 '위원회' 라 한다)를 둔다.
- ②위원회의 구성은 국제어학원장, 각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.
- ③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, 위원장은 국제어학원장으로 하고, 간사는 학적과장이 된다.

제9조(기타) 본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